

## 우체국연금보험 2312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우체국연금보험 2312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 ① 상품의 특이사항

Q : 우체국연금보험 2312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우체국연금보험 2312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상품으로 향후 운용이익금 발생시 배당혜택 제공
-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연금가입 형태로 3가지 연금형 판매
  - 종신연금형(정액형, 조기집중연금형) : 연금수령으로 평생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고 조기사망시에도 20년, 30년, 90세, 100세까지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
  - 확정기간연금형 : 원하는 기간(5, 10, 15, 20, 30년) 동안 연금수령하여 노후소득으로 활용 가능
- 새로운 연금지급형태인 종신연금형(조기집중연금형) 선택시 은퇴 이후부터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 절벽기 보완 가능
- 보장과 연금의 결합
  - 기본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제1보험기간에 재해장해시 장해보험금 지급

- 고수익 재테크 활용 상품 :
  - 실세금리를 반영한 높은 금리로 부리적립(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 최저보증)하므로 여유자금의 운용이나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으로도 적합
  - 월납 기본보험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간에 따른 고액계약적립금 추가 적립으로 수익률 증대
  
- 중도인출제도 및 추가납입제도 : 중도에 긴급자금 필요시 이자부담 없이 중도인출로 자금활용, 자유롭게 추가납입으로 고객편의를 제공하여 드림
  
- 세테크기회 제공 :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충족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

## ② 보험가입 자격요건

- 보험종류 : 일반연금(종신연금형(정액형, 조기집중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 ■ 보험기간

구분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종신연금형(정액형, 조기집중연금형) (20년, 30년, 90세, 100세 보증지급)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확정기간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확정지급)	계약해당일 전일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 연금개시나이,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연금개시나이 (A)	가입나이	기본보험료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기간	납입주기	
45~80세	0 ~(A-5세)	일시납 3,5,7,10,15,20년납	일시납 월납	수시납

주)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금개시 전 이내의 기간에서 선택 가능

■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액 (단위 : 만 원)

가입나이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일시납	월납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0세미만	500~4,000	10~110	10~60	10~40	5~30	5~20	5~10
20~29세	500~6,000	10~160	10~90	10~60	5~40	5~30	5~20
30~39세	500~8,000	10~190	10~110	10~80	5~50	5~40	5~30
40~49세	500~9,000	10~230	10~130	10~90	5~70	5~40	5~30
50세이상	500~10,000	10~270	10~150	10~110	5~80	5~50	5~40

- 주) 1. 일시납은 100만 원 단위, 월납은 1천 원 단위로 가입  
 2.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료를 초과하여 ‘연금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아래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보험료 추가납입 가능

\*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월 납) “연금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납입할 수 있는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기본보험료 × 200% ×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 와 “계약체결시점 가입나이의 기본보험료 최고 납입한도액에서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 중 작은 금액에서 해당년도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이내

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기본보험료 × 200% × 12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과 “계약체결시점 가입나이의 기본보험료 최고 납입한도액에서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12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단,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만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는 가입할 때(가입이후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1월)를 1개월로 하고 이후 해당 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1개월씩 증가(최대12개월)하는 것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이후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1월)을 1개월로 하고 이후 계약해당일이 경과할 때마다 1개월씩 증가(최대 12개월)하는 것으로 합니다.

- (일시납) “연금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기본보험료 × 200%” 와 “계약체결시점 가입나이의 기본보험료 최고 납입한도액에서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단,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만큼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 연금지급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제1보험기간(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중에는 연금지급형태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제1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적립금액(다만, 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월납계약의 경우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 일시납 계약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때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인출시 적립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단, 보험연도 기준 매년 최초 4회까지의 중도인출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적립금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고액계약 적립에 관한 사항 (월납계약에 한함)

- 기본보험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에 가산합니다.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고액계약 적립조건	고액계약 적립금액
3년납	기본보험료 > 30만원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분의 1.0%
5년납	기본보험료 > 30만원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분의 1.5%
7년납 이상	기본보험료 > 30만원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분의 2.0%

- 주) 1. 기본보험료는 해당 기본보험료 납입일의 금액으로 하며,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계산합니다.
2.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분”은 ‘0’으로 합니다.
3. 고액계약 적립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납입보험료는 고액계약 적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진단 여부 : 전건 무진단

####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 ① 상품의 구성

주계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선택)
-----	------------------------

##### ② 보험금 지급사유

아래 내용은 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계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제 1 보험기간	재해장해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납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20% × 해당 장해지급률
			월 납	월납 기본보험료의 20배 × 해당 장해지급률
제 2 보험기간	생존연금금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정액형: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30년 90세 100세 보증지급)	조기집중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조기집중기간 동안에는 이후 연금액의 일정비율이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30년 90세 100세 보증지급) * 조기집중기간 : 5년, 10년 연금액 비율 : 200%, 300%
			확정기간 연금형	

- 주) 1.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적립금액”이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기본적립금액과 추가 적립금액을 합한 금액(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고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

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 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의 100.1%로 합니다.

3. “기본 적립금액”이란 기본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추가 적립금액”이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하여 추가 적립금액에 가산합니다.
5. 종신연금형의 90세 또는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지급기간(90세 또는 100세)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90세 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20년, 30년, 90세, 100세)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9.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해당시점 적립금액에서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합니다. 다만, 보험연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사이율Ⅳ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11. 신공사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사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2.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사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사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사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3.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조기집중연금형)인 경우, 제2보험기간의 신공사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사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에도 조기집중기간 종료 직후년도 생존연금은 조기집중기간 종료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 종신연금형(조기집중연금형) 연금도해

아래의 금액은 조기집중연금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금액입니다.									
< 종신연금형(조기집중연금형)의 지급 예시 > - 조기집중기간 10년, 연금액비율 200% 신청시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10년간 연금액(100만원)은 조기집중기간 종료 후 연금액(50만원) 대비 200%를 지급									
100	100	...	100	100	50	50	50	50	...
조기집중기간(1차년 ~ 10차년)					조기집중기간 이후(11차년~종신)				
* 조기집중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5년 또는 10년									

\* 연금액비율 : 조기집중기간 종료 후 연금액의 200% 또는 300%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조기집중기간 이내 또는 조기집중기간 이후의 기간 내에서도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이 내의 친척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③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함)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범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기본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기본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소정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험금 등의 청구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연금 지급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li> <li>■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진단서</li> </ul>
사 망 시	○	○	○	
장 해 시	○	○	○	
해 약 시	○	○		
환급금대출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당해연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li> </ul>				

## ◆ 보험료 산출기초

### ① 예정이율

Q : 예정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우체국연금보험 2312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단위 복리 2.25%입니다.

## ② 예정위험률

Q : 예정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개인연금사망률 기준 : 40세 가입)

구분		20세	40세	60세
개인연금사망률	남자	-	0.000820	0.001830
	여자	-	0.000500	0.000600
재해장해발생지급률	남자	0.000274	0.000435	0.000760
	여자	0.000085	0.000158	0.000529

## ③ 적용이율

적용이율이란 체신관서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우체국연금보험 2312는 신공시이율IV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우체국연금보험 2312의 신공시이율IV가 변동될 경우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 ④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시중금리 등이 하락하여도 체신관서에서 보증해 드리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로서 우체국연금보험 2312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배당

Q : 계약자배당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체신관서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으로 환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운용결과에 따라 배당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과거 5년간 계약자배당 실적 (단위 : %, 억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4.4	1,332	4.3	1,312	4.3	1,630	4.3	1,763	4.3	1,838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신공시이율IV(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합니다)로 적립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② 해약환급금 예시

■ 일시납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기준, 단위 : 원)

기본보험료 경과기간	10,000,000	20,000,000	30,000,000
1년	10,044,580	20,089,170	30,133,760
3년	10,450,250	20,900,510	31,350,770
5년	10,878,960	21,757,920	32,636,890
7년	11,332,010	22,664,030	33,996,040
10년	12,060,280	24,120,560	36,180,840
15년	13,416,500	26,833,000	40,249,510
20년	14,973,530	29,947,070	44,920,600

- 주) 1. 위 표의 해약환급금은 신공시이율Ⅳ 2.80%가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되면 상기금액도 달라집니다.
2. 해약환급금 계산에 적용되는 신공시이율Ⅳ에 대하여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합니다.

■ 월납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기준, 단위 : 원)

경과 기간	100,000		200,000		300,000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1,200,000	965,530	2,400,000	1,943,240	3,600,000	2,920,960
3년	3,600,000	3,412,700	7,200,000	6,862,990	10,800,000	10,313,270
5년	6,000,000	5,994,070	12,000,000	12,052,550	18,000,000	18,111,040
7년	8,400,000	8,633,240	16,800,000	17,359,270	25,200,000	26,085,290
10년	12,000,000	12,875,630	24,000,000	25,889,650	36,000,000	38,903,660
15년	18,000,000	21,030,560	36,000,000	42,284,410	54,000,000	63,538,260
20년	24,000,000	30,392,930	48,000,000	61,106,630	72,000,000	91,820,320



- 주) 1. 위 표의 해약환급금은 신공시이율Ⅳ가 2.80%로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신공시이율Ⅳ 및 보험료 납입일 등이 변경되면 상기금액도 달라 집니다.
2. 해약환급금 계산에 적용되는 신공시이율Ⅳ에 대하여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합니다.

◆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수수료 안내표)

○ 기본비용 및 수수료

■ 일시납

(기본보험료 1,000만 원,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기준)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가입시	기본보험료의 1.50% (150,0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기본보험료의 0.066%~0.066% (6,555원~6,595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07%~0.0011% (72원~112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공제비용	해지시	해당사항 없음

주) 위험보험료 : 가입시점~연금지급개시전까지

## ■ 월납

(기본보험료 10만 원,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기준)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판매 보수	10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1.95% (1,950원) 10년 초과: 0% (0원)
			유지 보수	10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2.00% (2,000원) 10년 초과: 0% (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기본보험료의 2.89%~2.93% (2,888원~2,928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7%~0.11% (72원~112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공제비용	해지시	※ 아래 도표 참조	

주) 위험보험료 : 가입시점~연금지급개시전까지

###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후
해지공제금액(만 원)	16.8	12.6	8.4	4.2	0	0
해지공제비율(%)	14.0	5.3	2.3	0.9	0	0

주) 해지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의 비율

### ○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관리비용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0.8%